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8. 30.

行政委員會
專門委員金玉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9호로 2021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가.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에 따라 「국가 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 나. 등록장애인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로 구분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 제13호)
- 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추가
 -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을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추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추가 예산 조치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6. 10. ~ 6. 30./20일 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애인 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제1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9.15.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체계가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구분됨.
따라서 종전에 지원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 개정법령에서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제1항제13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란을 신설한 바,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고 면제 또한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상 수수료 면제 대상과 대부분 동일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등록장애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으나 면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을 추가하여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로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률 제11041호 이전 조항

-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 · 제6호 · 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 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 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 제5조 · 제7조 · 제10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3 국가보훈기본법

-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 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② 생략